



건축마당
법령
law & ordinances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4.1] [법률 제9566호, 2009.4.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3의2.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2005.3.31, 2006.4.28, 2008.3.21, 2009.4.1)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

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9.27>
- ⑤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개방화장실)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이동화장실)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 (간이화장실)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1조 (유료화장실)

-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시설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선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15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

<p>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p> <p>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p> <p>②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p> <p>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기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p> <p>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p> <p>제15조의3(협회의 감독)</p> <p>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6.4.28]</p> <p>제16조(보조금의 지급)</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하는 때에는 그 개선비</p>	<p>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p> <p>제17조(민간위탁)</p> <p>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조례에의 위임)</p> <p>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9조(보고 등)</p> <p>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20조 삭제 〈2009.4.1〉</p> <p>제21조(과태료)</p> <p>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4.1〉</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4.1〉</p> <p>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p> <p>③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4.1〉</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4.1〉</p> <p>제22조 삭제 〈2009.4.1〉</p> <p>부 칙 〈제7129호, 2004.1.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p> <p>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죽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p> <p>부 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 2004.10.22〉</p> <p>제1조(시행일)</p> <p>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p> <p>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 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p> <p>③ 내지 ⑫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 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7476호, 2005.3.31〉</p> <p>제1조(시행일)</p> <p>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p> <p>① 내지 ⑬ 생략 ④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p>
--	---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제7934호, 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 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 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 · 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 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하수도법)

〈제8014호, 2006.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내지 ⑤7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 까지 생략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도로법) 〈제8976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제9566호, 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침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6] [대통령령 제21471호, 2009.5.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1. 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 · 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2.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의 상점가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제6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법 제7조의2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6.11.9〕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②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종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1.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

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공사(공사)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4(협회의 지도·감독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본조신설 2006.11.9]

제12조 삭제 <2009.5.6>

부 칙 <제18492호, 2004.7.29>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727호, 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부터 <18> 까지 생략

부 칙 <제21471호, 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5.6] [행정안전부령 제79호, 2009.5.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석유 및 석유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중 신고체육시설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전문개정 2006.11.9]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번 기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9조 삭제 <2009.5.6>

부 칙<제244호, 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6호, 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제79호, 200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서

환경부 고시 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 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조사·예측한 자료가 없거나, 조사·예측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향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오수농도}(C) = \frac{Q_1 C_1 + Q_2 C_2 + \dots}{Q_1 + Q_2 + \dots}$$

Q1: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용도1의 오수농도,

Q2: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皇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산정식	
8 숙박 시설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250L/인	70	-	N = 0.04A	
	농어촌민박시설	250L/인	140	-	N = 0.12A	
	가족호텔, 푸드미니엄, 관광펜션	300L/인	140	-	N = P	
	야영장(帐篷장), 자동차 야영장	70L/인	320	-	N = P	
9 위탁 시설	우도 유동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60L/m ²	150	-	N = 0.3A
	일반 유동 주점	풀살롱, 단란주점, 요정, 스페드파	45L/m ²	250	-	N = 0.23A
	투천기업소, 카지노업소,	25L/m ²	150		N = 0.125A	
	우도장, 우도학원, 클라스	16L/m ²	150		N = 0.08A	
10 종업 시설	공장, 작업소, 미술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40L/인	100	-	N = 0.5P	
11 자동 차관련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50L/인	260	-	N = 16C	
	주차장 ⁷⁾ , 주기장 ⁸⁾	50L/인	260	-	N = 16C	
12 문화 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강회원	200L/인	200	-	N = P	
	월영소	15L/m ²	100	-	N = 0.075A	
	군대숙소	200L/인	200	-	N = P	
	공중화장실	50L/인	260	-	N = 16C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산정식
13 묘지 관련 시설	화강시설, 통인당	15L/m ²	150	-	N = 0.08A
14 관광 유기 시설	휴게소	50L/인	280	-	N = 16C
	관광당	16L/m ²	150	-	N = 0.08A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총변기수는 대변기수와 소변기수의 합계로 한다. 단, 여자 전용 화장실의 총변기수는 대변기수×1.5로 산정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9) A는 연면적(m²), B는 병상수(개), C는 총변기수(개), H는 홀수,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P'는 야간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 S는 타석수(석) 또는 코트수를 의미한다.